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과 간도 문제의 식민화*

배 성 준**

국문초록

기존의 연구가 간도 문제와 간도파출소의 관련성이나 간도파출소의 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도파출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가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간광지대 개념이 대한제국의 간도 담론과는 상이한 식민주의 담론에서 기원하며, 간도의 영역도 '한인잡거구역'으로 전환되었음을 규명하였다.

간도파출소는 간도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간도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간도파출소 설립 이후 간도 문제에 대한 현지 조사는 물론이고 간도의 현황, 관습, 호구, 산업 등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간도 문제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의 역사는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간도 문제의 기원이 되는 것은 17세기 초 정묘화약으로 출현하여 2백여 년 동안 유지된 '간광지대'이고, 19세기 후반 청국이 간광지대를 개방하면서 한·청 간에 경계문제가 대두되었다. 1880년대에 열린 국경회담은 미결로 끝났고, 러일전쟁으로 중단된 경계 교섭은 간도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재개되었다고 보았다. 나이토에서 시노다로 이어지는 이러한 인식은 대한제국의 토문강 경계론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광지대를 청국의 지배도 조선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로 간주하였다. 간도를 중립지대, 나아가 무주지로 바라보는 간도파출소의 인식은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던 식민주의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간도파출소 설치를 통하여 간도를 확보하려던 일본 정부의 방침이 1908년 하반기 들어 바뀌면서 간도의 범위도 축소되었다. 간도 한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간도파출소에서 상정한 간도의 범위는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는 범위로 축소되고 길회철도 조문과 석을수 경계가 교환되면서 청국측의 석을수 경계가 관철되었다. 일본 정부가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면서 간도파출소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간도의 범위는 간도협약에서 두만강 이북의 '한인잡거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간도파출소, 간도 문제, 토문강, 간광지대, 한인잡거구역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 AKS-2021-KSS-1120008)

** 전 동북아역사재단 / transjoon77@gmail.com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간도파출소에 의한 간도 문제의 전유 |
| II. 간도파출소의 간도 조사 | V. 간도파출소의 철수와 '한인잡거구역'의 탄생 |
| III.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 | VI. 맺음말 |

I. 머리말

1907년 8월 19일 회령을 출발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郎)을 위시한 60여 명의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이하 '간도파출소') 일행은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들어갔으며, 23일 용정촌(龍井村)에 간도파출소를 세우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간도파출소가 설립되던 날, 사이토 소장은 고시문을 간도 각지에 게시하여 "본직(本職)이 이 땅에 온 것은 실로 대한국 황제폐하의 성의(聖意)를 받들고 통감각하의 명을 받아 오로지 그대들 한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복리를 증진시킴에 있으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본직을 신뢰하고 복종¹⁾해야 한다고 간도 한인(韓人)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간도파출소가 세워졌음을 널리 알렸다. 또한 주청 임시대리공사 아베 모리타로(阿部守太郎)는 청 외무부에 조회문을 보내어 "간도가 청·한 어느 쪽의 영토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종래 양국 간의 현안으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는 한국 신민은 금일 그 수가 대체로 십여 만에 달하고 때때로 마적과 기타 무뢰배의 능욕과 학대를 받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일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간청을 접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통감부로 하여금 그 관원을 급히 간도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결국 그 목적이 오로지 거주 한민의 보호에 있으므로 청국 정부는 충분히 위에서 말한 사정을 양해²⁾하기 바란다"고 간도 귀속 문제와 더불어 통감부 관원 파견을 통보하였다.

통감부에 의한 간도파출소 설립은 표면상으로는 "한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고 하였지만, 통감부에 의한 한국 지배를 간도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청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통감부의 간도파출소 설립에 대응하여 동삼성(東三省) 총독은 10월 국자가(局子街, 현재의 연길)에 군경을 파견하여 '길림변무공서(吉林邊務公署)'를 세움으로써 양국의 대치가 시작되었고, 12월부터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주청 일본공사와 량둔옌(梁敦彥) 청 외무부 상서 사이에 간도 교섭이 개시되었다. 양국의 간도 교섭은 우여곡절을 거쳐 1909년 9월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후 '간도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일·청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막을 내렸고, 간도협약 제7조에 따라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의 각원은 되도록 속히 철퇴를 개시하여 2개월로써 완료"해야 했기에 간도파출소의 활동은 2년 만에 종결되었다.

간도파출소와 일·청 간도 교섭 및 간도협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간도

1) 「告示」, 『統監府文書』 2, 「間島問題에 關한 書類」(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2冊, 「間島問題一件」, 92쪽(外務省外交史料館 홈페이지 『日本外交文書』 디지털컬렉션).

파출소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간도파출소의 설립 배경, 간도 문제와 간도파출소, 간도파출소의 활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의 선구적 연구에 이어,³⁾ 권구훈에 의하여 간도파출소 설치, 조직, 활동, 철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본측 자료를 통하여 간도파출소의 활동 전반이 대체로 밝혀졌다.⁴⁾ 김춘선과 이화자는 중국측 자료를 중심으로 간도파출소의 활동을 간도 한인사회 및 일·청 간도 교섭과 연관시켜 탐구하였다. 김춘선은 1880년대에서 간도협약까지 북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907년 일제의 간도 침입으로 북간도 한인사회는 친일세력과 친중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일제의 간도 침입과 간도파출소 설치의 “북간도 지역 한인에게 아무런 보호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중통치와 압박이라는 고통만 안겨주었다”고 파악하였다.⁵⁾ 이화자는 1907년에서 1909년에 걸친 중·일 양국의 간도 교섭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간도파출소에서 설정한 간도 범위와 세력확장 과정, 그리고 간도협약에서 규정한 ‘조선인잡거구역’을 분석하였다.⁶⁾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간도 침입과 청국의 대응이라는 대립틀 속에서 간도파출소를 바라봄으로써 간도파출소의 역할과 담론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쑹넨선(宋念申)은 188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친 두만강 경계 문제를 검토하면서 간도파출소의 활동을 “동아시아 식민화 사업의 원형”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청국이나 한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무인지대(=無主地)’로 설정하는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주장을 식민주의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⁷⁾ 그는 간도파출소의 역할과 담론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주었지만, 간도파출소의 간도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천착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사 정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도파출소에서 생산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과 간도 문제의 식민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에 주목하는 것은 간도파출소의 간도 담론의 기원과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간도 담론과 간도파출소의 간도 담론이 상이한 기원과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간도파출소에서 행한 간도 조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간도 조사의 결과 간도파출소에서 통감과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와 간행물을 중심으로 간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간도파출소의 ‘간광지대(間曠地帶)’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간도 담론이 어떻게 간도파출소에 의하여 전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간도파출소의 간도 조사

간도파출소에서는 용정촌에 간도파출소를 설립하기 이전에 간도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데 이

3) 秋月望, 「統監府 間島派出所의 設置 動機」, 『史叢』 26, 1982.

4) 권구훈, 「일제의 통감부간도파출소 설치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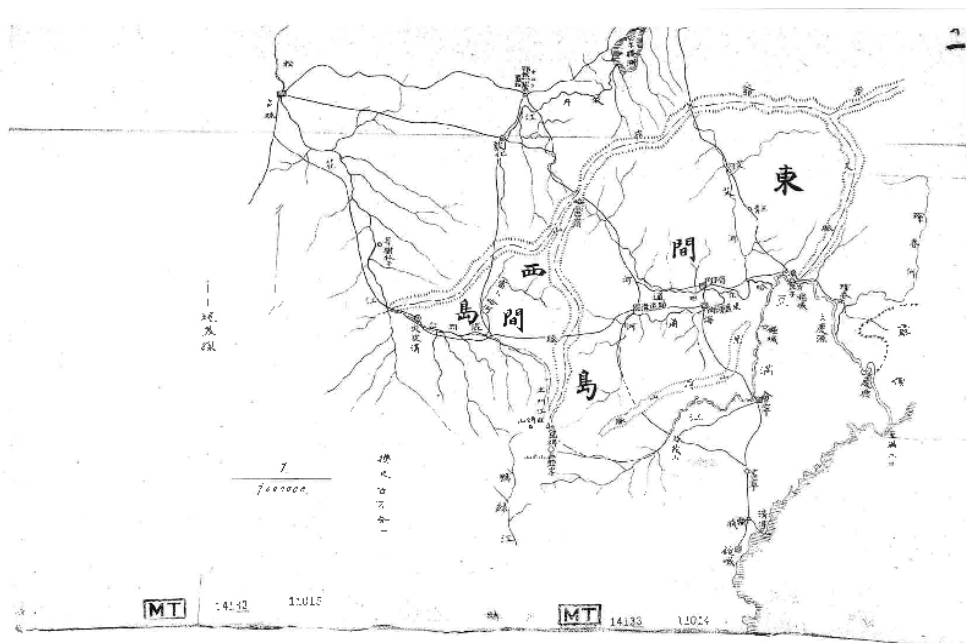
5) 김춘선,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009.

6) 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해안, 2019, 제3편 ‘간도문제’ 연구.

7) Nianshen Song,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쑹넨선(지), 이지영·이원준(역),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너머북스, 2022).

어, 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한·청 국경문제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1907년 3월 한성에 들어온 간도파출소 선발대는 러시아군 철수 직후 간도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러·일 간의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협약 타결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에 사이토 소장과 국제법 전문가로 간도파출소에 합류한 시노다 지사쿠는 간도로 들어가서 간도파출소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스즈키 신타로(鈴木信太郎)는 한성에서 간도 문제에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이토 소장 일행은 “간도 일반의 상태 및 장래 설치해야 할 통감부파출소의 위치 등에 관한 개괄적인 관찰”⁸⁾을 위하여 4월 18일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들어갔으며, 국자가, 천보산(天寶山), 두도구(頭道溝), 육도구(六道溝) 등지를 돌아본 후 29일에 종성으로 돌아왔다. 간도 조사를 마친 사이토는 5월 외무성에 『간도시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찰 결과를 토대로 간도의 중심에 위치한 남강(南崗) 서부 마안산(馬鞍山) 남쪽 평지에 간도파출소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⁹⁾ 보고서에서는 간도의 가정(假定) 경계, 지세, 청한 주민의 비율, 교통, 청국 정부의 통치(일반행정, 군대 및 경찰, 수세(收稅), 재판사무), 주민의 상태, 물산과 산업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통감부파출소의 위치와 권한, 간도의 관현, 간도의 개발, 간도의 칭호(稱呼)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REEL No. 1-0366

003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search

〈그림 1〉 간도의 가정 경계(『間島視察報告書』附圖-1)

8) 『間島視察報告書』, 1907.5, 0007쪽(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Ref. B03041215700).

9) 위의 책, 0030-0031쪽.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간도의 범위인데, 간도파출소는 간도 한인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국 정부와의 교섭을 앞두고 간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간도의 가정 경계, 즉 임시적인 간도의 범위를 북쪽으로는 노야령(老爺嶺)산맥, 남쪽으로는 백두산정계비에서 온성에 이르는 두만강, 동쪽으로는 애하(艾河)와 훈춘하(琿春河)의 분수령을 이루는 노야령산맥의 지맥, 서쪽으로는 토문강과 송화강 상류(백두산정계비-夾皮溝)로 설정하였으며, 합이파령(哈爾巴嶺)에서 노야령산맥의 지맥을 따라 백두산정계비에 이르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을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로 나누었다.¹⁰⁾

간도파출소에서 이렇게 간도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연해주가 이미 러시아가 청국으로부터 할양받은 지역이고, 1905년 12월에 체결한 「일·청 간 만주에 관한 조약」에서 길림(吉林), 영고탑(寧古塔), 훈춘을 상부지로 개방하였다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었다.¹¹⁾ 한국 정부의 주장 대로라면 ‘토문강-송화강-흑룡강’ 동쪽이 간도의 영역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하여 경계가 결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토문강을 포함하면서도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간도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간도와 서간도를 나누는 것은 통감부파출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간도파출소 설치와 더불어 동간도는 북도소, 종성간도, 회령간도, 무산간도의 4구역으로 나누어 도사장(都社長) 제도를 실시하였고, 주요 지점에는 분진소(分遣所)를 두어 헌병을 배치하였다.

문헌 조사는 스즈키 측탁이 중심이 되어 1907년 3월에서 7월까지 백두산정계비 관련 기록, 1880년대 국경회담 관련 기록, 간도시찰사 이범윤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의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옛 서적이나 문서를 수집,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는 7월에 「청한국경문제연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통감에게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간도파출소에서 처음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고려 윤관의 여진 정벌에서 대한제국기 이범윤의 간도 파견에 이르는 역사를 서술하였고, ‘토문·두만 동일강론(土門豆滿同一江論)’을 취한 청국측 주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하였다.¹²⁾

간도파출소는 설치 직후에 총무과 스즈키 사무관을 중심으로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 현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제1차 현지 조사는 백두산정계비가 있는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의 흐름을 조사하기 위하여 1907년 9월 5일부터 약 한달 가량 실시되었다. 조사단 일행은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 일대를 조사하고, 토문강의 흔적을 따라 송화강 상류에 있는 소사하구자(小沙河口子)까지 내려왔다.¹³⁾ 조사 결과 백두산 정상에 정계비가 현존한다는 점, 정계비에서 이어지는 석퇴가 끝나는 지점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제2차 현지 조사는 청국에서 두만강 상류를 따라서 세웠다고 주장하는 10개의 국경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단은 『길림통사(吉林通史)』의 부속지도를 따라 두만강 상류 지역을 답사하였고,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국경비가 세워진 흔적이 없음

10) 간도파출소가 설립되고서 한국인들이 압록강 대안을 ‘서간도’라고 칭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간도는 ‘동간도 동부’, 서간도는 ‘동간도 서부’로 변경하였다.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殘務整理所 編,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1910.3, 32쪽.

11) 『間島視察報告書』, 0008-0009쪽.

12) 統監府派出所, 『清韓國境問題沿革』, 1907.7.(B03041215800)

13) 제1차 현지 조사에는 참모본부에서 파견한 2명의 측량수가 대동하였으며, 현지 조사 및 측량 결과 「白頭山至小沙河路線圖」(5만분의 1)와 「長白山附近路線測圖」(40만분의 1)를 작성하였다. 이화자, 앞의 글, 244~246쪽.

을 확인하였으며, 1887년 국경회담 당시 국경비를 세울 목적으로 청국측에서 운반해 온 15개의 석비가 무산 인근의 홍단수(紅丹水) 하류에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⁴⁾

또한 간도파출소는 1908년 2월에 국경회담 당시의 사정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감계사 이중하의 수행원이었던 전 무산군수 지창한(池昌翰)을 불러 탐문하였다. 지창한을 통하여 이중하의 「추후별단(追後別單)」에 있는 목책의 흔적에 관한 사정,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홍토수(紅土水)를 제기한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중하가 목책의 흔적에 대하여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정부 및 국민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를 만든 것”이며, 이중하가 홍토수설을 주장한 것은 청국측을 백두산정계비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고, “토문강설이 도저히 그들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을 것임을 자각하고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단으로 홍토수로 양보하였다”고 정리하였다.¹⁵⁾ 간도파출소에서는 조사 내용과 더불어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덧붙여 4월에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감에게 제출하였다.

간도파출소는 간도 지역의 성터, 고분, 유물 등 유적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해란하 양안의 고분군을 비롯하여 두도구의 동고성자(東古城子)·서고성자(西古城子), 국자가의 성터, 회령 대안의 토성치(土城峙)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회령 대안의 토성치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를 정벌했을 때 공략한 성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조사단은 국자가 서쪽에 있는 부르하통하(布爾哈圖河) 수중에서 한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이 비석이 고려 윤관이 세운 선춘령비이고 고려 때의 선춘령이 국자가 부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⁶⁾

간도파출소 설치 이전의 현지 조사가 동간도 동부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1908년 4월에는 동간도 서부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⁷⁾ 1908년 5월 간도파출소의 스즈키 사무관 일행은 동간도 서부를 답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동간도 서부의 지세, 교통, 한인 거주지, 한인·청국인 이주의 역사, 청국의 행정 실태, 호구 및 토지 소유, 농업 실태, 사금광과 산림 개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간도 서부는 간도파출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인의 숫자가 적어서 간도파출소에서 관찰하지 못한 곳이지만, 조사 결과 ‘한변외(韓邊外)’의 근거지였던 곳이고 한인의 비율도 16%에 불과하기에 분견소를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간도 지역의 관습, 호구,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인 관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관습 조사는 감찰과의 김해룡(金海龍) 서기관이 1908년 1월에 한인·청국인의 간도 이주 연혁을 비롯하여 간도 한인의 친족제도, 가옥제도(大屋·小屋), 토지제도, 차금(借金)제도, 행정제도, 경찰·재판제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사 결과는 종교, 선사인(鮮事人),¹⁸⁾ 청·러 교전, 학교에 대한 조사기와 더불어 1917년에 『간도 거주 한인의 친족, 관습 및 기타』라는 제목을 붙여 ‘간도문제 조사자료’의 일부로 편찬되

14)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57~59쪽.

15) 위의 책, 65~67쪽.

16) 위의 책, 89~91쪽.

17) 위의 책, 228~241쪽.

18) ‘鮮事人’은 간도 한인들이 실시한 향약의 직임. 鮮事人은 지역의 명망가 중에서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며, 문서를 관리하고 각종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다.

었다.¹⁹⁾ 호구 조사는 1907년 9월에서 11월까지, 1909년 1월에서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각 현병 분견소에서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적부(戶籍簿)를 편성하였다.²⁰⁾ 산업 조사는 농업, 지질·광물, 상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농업 조사는 각 지역을 시찰하면서 이주·개간의 연혁을 비롯하여 토성(土性), 경지 면적, 작물의 종류, 수확량, 농산제조업, 농민생활 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간도파출소 뒤편에 모범 농원을 설치하여 농업 개량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였다. 지질·광물 조사는 지세와 지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광상(鑛床)을 확인하고, 각지의 사금지 및 금광, 은광, 동광, 석탄광 등을 조사하였다. 상업 조사는 생산물, 통화, 무역, 상업 관습, 도량형, 교통, 부력(富力) 등을 조사하였으며, 인근의 돈화, 길림, 훈춘에 대한 상업조사도 실시하였다.²¹⁾

Ⅲ.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

1. 「청한국경문제연혁」의 간도 문제 인식

간도 문제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간도파출소의 견해가 처음 정리된 것은 간도파출소 설치 직전인 1907년 7월 통감에게 제출한 「청한국경문제연혁」이다. 이 보고서는 시노다의 현지 조사와 스즈키의 문헌 조사가 종합된 것으로, 고려에서 18세기까지의 국경 문제, 1880년대 국경회담, 이범윤의 간도 파견과 그의 활동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와 더불어 간도 문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고려에서 18세기까지 국경 문제에서 주목되는 곳은 고려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여 함경도 영흥 이북을 회복함으로써 여진과의 경계가 두만강에 이르렀다고 파악한다는 점, 백두산에서 발흥한 청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감에 따라 “동 지대(백두산 지역-필자)는 이를 조선측에서 보아도 이를 청국측에서 보아도 하등 정치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화외지(化外地)에 불과”²²⁾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는 점, 백두산정계비 건립으로 조선과 청국 사이에 토문강 이동과 두만강 이북의 영역이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파악하는 점이다.

1880년대 국경회담에 대해서는 조선측 감계사와 청국측 감계사의 주장을 정리하고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함경북도 관찰사 조준우와 경원군수 박일헌의 보고서를 수록함으로써 청국측의 ‘토문·두만 동일강론’을 논박하였다. 이범윤의 간도 파견에 대해서는 이범윤이 제기한 한청통상조약 제12조의 해석(“양국 변민의 생명, 재산은 응당 양국 관리에 의해서 각자 보호”)이 “실로 정정당당한 명설(名說)로서 국제상 참으로 정확한 해석”²³⁾이라고 이범윤의 간도 파견 및 간도에서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론에서 토문강과 두

19)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編, 『間島在住韓人ノ親族慣習及其他』, 1917.

20)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127~128쪽.

21)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殘務整理所 編, 『間島産業調査書』, 1910.

22) 『清韓國境問題沿革』, 0054쪽.

23) 위의 책, 0103~0104쪽.

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중국학자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의 『중국 서술(Description de la China)』²⁴⁾을 인용하여 “두만강은 한국 영토 안에 있고 양국의 국경선은 훨씬 그 북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⁵⁾

「청한국경문제연혁」은 중국의 두만강 경계론을 비판하면서도 백두산지역을 ‘화외지’로 파악하고 있다. ‘화외지’ 개념은 모리타 토시토(守田利遠)가 1906년에 편찬한 『만주지지(滿洲地誌)』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모리타는 화외지역을 “문명의 바깥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화외지역(化外區域)’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한변외(韓邊外)’와 ‘간도’ 두 지역을 다루고 있다.²⁶⁾ 간도파출소는 두만강 이북의 간도에 교두보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이지가 중국의 두만강 경계론을 논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고, 영토 주장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간도는 청국과 조선 양국과 무관하거나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곳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의도에서 간도파출소는 모리타의 용어를 빌어 17세기 백두산 지역을 ‘화외지’로 파악하였고, 백두산정계비 건립은 두만강 이북의 영역이 논란거리가 되는 계기로 간주하였다.

2.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의 간도 문제 인식

「청한국경문제연혁」에서 출발하는 간도 문제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1908년 4월 통감에게 제출한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간도파출소의 현지 조사와 그간의 간도 교섭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에 기반해 있으며, 1907년 10월 외무성에 제출된 나이토 코난의 『간도문제조사서』에 대한 간도파출소의 견해를 담고 있다.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는 18세기 이전 한·청 국경의 역사, 백두산정계비 건립, 1885년 국경회담, 1887년 국경회담, 국경회담 이후 간도 문제와 선후장정 등 5개 부분을 중심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²⁷⁾

18세기 이전 한·청 국경의 역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춘령을 노야령산맥 중의 한 봉우리로 추정하여 고려의 영역이 동북으로 수분하(綏芬河), 서북으로 노야령산맥에 이르렀다고 본 점, 그리고 후금과 조선이 정묘화약(1627)을 맺고 “강역을 엄수하고 사적인 월경을 금단”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간광지대(間曠地帶)’가 출현하였다고 파악한 점이다.²⁸⁾ 조선과 청국 사이에 비어 있는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의 성격을 ‘중립지대’로 파악하는 것은 나이토 코난의 간도 문제 보고서에서 유래한 것인데,²⁹⁾ 이에 대한 근거로서 뒤 알드의 저서

24) 『중국 서술(Description de la Chine)』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뒤 알드의 저서는 1735년에 출판된 『중국 제국과 중국의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에 대한 서술(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i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이다.

25) 『淸韓國境問題沿革』, 0110쪽.

26) 守田利遠 編, 『滿洲地誌』, 東京: 丸善株式會社, 1906, 제7편 「化外區域」 참조.

27)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間島問題之願末並意見書』, 1908.4. (B03041216000, B03041216100)

28) 위의 책, 0120, 0124, 0126쪽.

29) 나이토 코난은 1906년 2월 참모본부에 『間島問題調査書』를 제출하였고, 1907년 10월 외무성에 이전의 보고서를 보완한 『間島問題調査書』를 제출하였다. 앞의 보고서에서는 “空曠・無人的의 곳”이라거나 “中立地의 상태”라고 묘사하는 반면, 뒤의 보고서에서는 ‘間荒地帶’, ‘中立地帶’라고 개념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間島問題調査書』, 1906.2, 0103-0104쪽. (B03041212500); 『間島問題調査書』 第二卷, 1907.4, 0314-0315쪽. (B03041213500)

『중국 서술』에 나오는 레지(Jean-Baptiste Regis, 중국명 雷考思)의 비망록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즉 “봉황성의 동쪽에는 조선국의 서쪽 국경이 있고……장책(長柵)과 조선과의 국경 간에 무인 지대를 두기로 의정하고 이 국경을 지도상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³⁰⁾이라는 레지의 설명을 통하여 두만강을 청·한 양국의 천연의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청국측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선춘령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토문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레지의 무인지대에 대한 언급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국경이 있었다는 설명은 간도 문제를 풀어갈 단서로 주목되었고,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간광지대 개념이 등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는 청국측의 주장을 반박할 “유일한 증거물”³¹⁾로 부각될 뿐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과정이나 의미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백두산정계비 수립 이후 청국에서 두만강 건너편에 촌락을 형성하거나 병력을 주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조선의 항의로 이를 중단시킨 점, 월경한 범인을 양국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간도에는 청국의 지명을 붙이지 않은 점 등은 간광지대가 존재한다는 것과 백두산정계비가 두만강을 경계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880년대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국경회담과 국경회담 이후의 간도 문제에 대한 서술에서는 중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는 한편, 국경회담을 거치면서도 경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887년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토문강을 버리고 홍토수를 주장한 것은 이중하 개인의 독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으며,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곳 이하는 결정되었지만 그 이상은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 국왕의 조회에 대한 청국측의 공윤(公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회담은 “미결부조(未決不調)”로 끝났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광서 13년의 감계담판은 불성립(不成立)으로 마쳤기 때문에 청국은 홍단수가 두만강으로 합류하는 지점까지 운반해 온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중단하였고 또 해당 담판은 철두철미 청국의 위협과 협박 아래에서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었다.³²⁾ 이후 이범윤의 간도 파견에 대해서 청국측이 이범윤의 철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관원을 파견하여 감계할 것을 요청한 것은 1887년의 감계가 전부 미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양국의 지방관이 체결한 선후장정³³⁾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국은 종래 주장하여 왔던 도문강으로써 천연의 경계로 삼는다는 주장을 전부 방기하고 이전에 한국이 주장한 백두산정계비를 기초로 하여 경계를 정할 것”³⁴⁾을 성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1887년 국경회담과 관련해서 조선 국왕이 부동의(不同意)를 통고하였고 최근 청국도 스스로 미결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한·청 간의 경계는 미정이며, 선후장정에서 정계비를 기초로 하여 다시 경계를 협정할 것을 약속하고 러일전쟁 이후로 경계 교섭이 연기된 상황을 한·청 경계교섭의 결말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경계 교섭을 계승한 일본이 청국과의 협상에서 간도의 범위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30) 『間島問題之顛末並意見書』, 0125쪽.

31) 위의 책, 0128쪽.

32) 위의 책, 0146쪽.

33) 1904년 6월에 체결된 선후장정의 정식 명칭은 ‘변계선후장정(邊界善後章程)’이고, 한국측에서는 진위대대장과 변계경무관, 청국측에서는 연길청 지부(知府)와 길강군 통령(統領)이 서명하였다.

34) 『間島問題之顛末並意見書』, 0164쪽.

『간도시찰보고서』에서 제시한 ‘간도 가정 경계’를 간도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의 「의견」에서는 간도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서 “① 우리 정부는 종래대로 의연히 백두산정계비를 기초로 하여 간도가 경계 미정지임을 주장할 것, ② 교섭중 간도파출소로서 위엄을 손상치 않고 그 체면을 유지하며 간도에서의 한민 보호의 구역을 더욱 확장할 것”³⁵⁾을 제안하고 있다.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는 나이토의 『간도문제조사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나이토의 보고서가 외무성의 간도 교섭을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간도파출소가 제기하는 논점과 비판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이토의 보고서에 대한 간도파출소의 비판은 ①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단정한 점 ② 간도 지역 카룬(卡倫)의 위치 ③ 1882년 고종이 월간 유민의 쇠환을 요청한 자문 등에 대한 것이다.³⁶⁾ 나이토는 백두산정계시 무산에서의 월간 별목에 대하여 김지남이 목극등에게 변소(辨疏)한 사실, 1880년대 국경회담시 이중하의 추후별단 등을 근거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김지남의 변소가 두만강 밖의 간광지대로 월정한 한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중하의 추후별단에 나오는 목책의 흔적은 이중하의 수행원이던 지창한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나이토가 간도 지역 내에 카룬이 존재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리상 험준한 지형 때문에 카룬은 노야령 밖 영고담, 액목색(額木索), 훈춘의 평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나이토가 고종이 월간 유민의 쇠환을 요청한 것과 그 후 토문강 이남과 두만강 이북을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모순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약소한 조선으로서 완강한 청국을 대하는 부득이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도파출소는 토문강을 두만강과 동일한 강으로 보는 중국측의 주장을 일관되게 비판하였기에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인정하는 나이토의 견해를 반박하였지만, 두만강 이북의 영역에 대한 간광지대라는 해석, 이중하의 추후별단에 대한 상황 설명, 카룬의 위치에 대한 추정 같이 자료의 단편적인 해석이나 추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3.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의 간도 문제 인식

간도파출소에서 그간의 활동과 더불어 간도 문제의 역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간도협약 체결로 간도파출소가 철수한 직후이다. 1909년 11월 간도파출소에서는 『간도사진첩』을 간행하여 간도파출소의 활동을 소개한 데 이어, 1910년 3월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殘務整理所)에서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와 『간도산업조사서』를 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시노다가 편찬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에는 간도문제의 내력(來歷), 간도 답사와 간도 경계 문제에 대한 연구, 간도파출소의 개설에서 철수에 이르는 과정, 간도파출소의 주요 활동과 사업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간도문제의 내력」에서는 발해에서 시작하여 일·청 간도 교섭에 이르는 간도 문제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간도문제의 내력」에서는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간추려 보자면,

35) 위의 책, 0170-0171쪽.

36) 위의 책, 0128-0129, 0132-0133, 0139-0140쪽.

통상 고려의 북방 경계로 삼는 윤관의 선춘령비는 공험진과 더불어 그 위치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광지대의 출현이다. 1627년 정묘화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에 간광지대가 성립되었고, 이는 레지의 기록이 입증한다. 백두산정계비는 두만강이 한·청 양국의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19세기 전반까지 양국은 간광지대로의 월경을 금지하면서 간광지대를 유지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청국이 간광지대를 개방하고 개간에 나섬에 따라 양국 사이에 경계 문제가 제기되었다. 1880년대에 열린 두 차례의 국경회담은 양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측은 토문강 경계, 중국측은 두만강 경계를 주장함으로써 미결로 끝났다. 1887년 국경회담에서의 홍토수 경계는 청국의 위협 속에서 이중화 개인의 독단에서 나온 것이지 정부의 견해가 아니었다. 이후 청국측에서 이범윤의 철퇴를 조건으로 재감계를 요청한 것, 선후장정으로 백두산정계비를 기초로 경계를 정할 것에 양국이 합의한 것 등은 국경회담이 미결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간도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러일전쟁으로 중단된 경계 교섭이 재개되었다.³⁷⁾

이상에서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 간도 문제의 역사는 1908년 4월에 제출한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간도문제의 내력」이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전제하거나 축약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공험진과 선춘령에 대한 부분,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서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자면,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는 선춘령의 위치를 노야령산맥 중의 한 봉우리로 비정하고 이에 따라 고려의 영역이 동북으로 수분하, 서북으로 노야령산맥에 이르렀다고 보았지만 「간도문제의 내력」에서는 “선춘령과 공험령의 위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³⁸⁾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에서는 백두산정계비가 청측의 주장을 반증하는 “유일한 증거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토문강이 두만강과 동일한 강이라고 말하는 여러 기록과 주장을 반박하는 반면, 「간도문제의 내력」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간도파출소의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정계비의 위치, 정계비 주변 지형, 토문강-송화강의 흐름을 서술하였다.³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도파출소는 간도 문제의 기원이 17세기 초에 출현한 간광지대에서 유래한다고 보았으며, 간도 교섭에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간도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렇지만 간도 문제의 역사에서 간광지대가 중심이 됨으로써 백두산정계비는 ‘정계비’로서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국경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부수적인 존재로 축소되었다.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에서 간도 문제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그간 수행된 간도 문제의 역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7)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중 제1장 간도문제의 연혁.

38)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1쪽.

39) 위의 책, 7쪽.

IV. 간도파출소에 의한 간도 문제의 전유

1. ‘간광지대’와 ‘토문강 경계론’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의 중심에는 ‘간광지대’ 개념이 있다. 간도 문제의 기원이 되는 것은 17세기 초 정묘화약으로 출현하여 200여 년 동안 유지된 간광지대이고, 19세기 중반 청국이 간광지대를 개방하면서 한·청 간의 경계 문제가 대두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간도 문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간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일본측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광지대가 ‘중립지대’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두만강 이북은 조선 뿐만 아니라 청국의 통치도 미치지 않는 땅이 되고, 당연히 청국측의 토문강=두만강 주장에 기반한 두만강 경계론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광지대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는 간도 문제의 역사는 한국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제국 정부나 지식인의 간도 문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대한제국의 간도 문제 인식은 선춘령비 및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한 ‘토문강 경계론’이 중심이었다. 한청통상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독립신문』에서는 “함경북도 육진 지경 두만강 건너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칠팔백 리 토지가 당당한 대만에 속한 토지라. 조선 전조 공신 윤시중이 북도 개척할 때에 토문강에 정계비를 세웠는지라. 그러한 고로 십여 년 전에 조선 정부에서 그 토지를 찾고자 하다가 국제상 공법을 몰라서 그 일을 결말치 못하였거니와 지금 청국 사신이 와서 새로 조약을 하는 지경이니 대한 토지를 대한에서 찾는 것이 당당한 일”⁴⁰⁾이라고 한청조약을 통하여 두만강과 토문강 사이에 있는 간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청통상조약 체결 당시 내부(內部)에서 시행한 백두산정계비 현지조사에서는 “두만강을 가리켜 토문강이라 함은 구차한 주장……토문강의 상원(上源)으로부터 하류의 바다에 들어가는 곳에 이르는 동쪽은 진실로 경계 내의 땅”⁴¹⁾이라고 토문강 경계를 강조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의 토문강 경계론을 대표하는 것은 김노규(金魯奎)의 『북여요선(北輿要選)』이다. 김노규는 두만강 너머 알동(幹東)에 있는 목조(穆祖)의 유적에 주목하여 알동과 해관(奚關)을 왕조의 발상지로 보았으며, 풍수지리적으로 백두산이 용세(龍勢)의 본류이고, 흑룡강이 좌익, 압록강이 우익이 되며, 가운데에 두만강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⁴²⁾ 두만강 유역을 역사지리적 중심으로 파악하는 김노규의 인식은 ‘토문강 경계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초에 근본하여 논하면 선춘령 남쪽이 다 우리 강토에 속하나 요컨대 백두산을 넘지 않는다. 아아, 중국의 태산이 남쪽은 노(魯)나라요, 북쪽은 제(齊)나라였는데 이제 백두산의 좌우는 한·청의 분계로 한국이 먼저 두만강 북쪽에서 왕업(王業)을 시작했고 청국 역시 송화강 북쪽에서 일어났으니,

40) 『독립신문』, 1899.2.28, 잡보, 「좋은 의견」.

41) 「査界公文放」, 『北輿要選』 下.

42) 우경섭, 「한말 두만강 지역의 유학자들 - 金魯奎와 金鼎奎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2, 2014, 45~47쪽.

오직 토문강의 한 줄기가 그 가운데를 흘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망사(望祀)하기에 이르러선 거의 노·계 두 나라에서의 태산(泰山)의 경우와 같다”⁴³⁾

라고 백두산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국의 경계로 파악하였다. 조선의 발상지는 두만강 이북에 있고 청국의 발상지는 송화강 이북에 있으므로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이 청국의 영역이고 남쪽이 조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청통상조약에서 청국측이 유민의 월간을 엄금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유민이 건너간 두만강 대안을 “교계(交界)의 황폐한 땅”⁴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지만, 이는 간도 이주민의 월강 개간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었고,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래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영토는 당연히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간주하였다.

2. ‘간황지대’에서 ‘간광지대’로

간도파출소의 보고서에 나오는 간광지대 개념은 나이토 코난의 간도 문제 보고서에서 인용, 가공한 것이기에, 간광지대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나이토 코난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나이토는 1907년 4월 외무성에 제출한 『간도문제조사서』에서 청조의 발흥기를 육진(六鎭)시대에서 백두산정계에 이르는 과도기로 파악하고 이 시기에 간황지(間荒地)가 ‘중립지대’로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즉 “천총·송덕 연간은 실로 육진 시대로부터 강희 정계에 이르는 과도기로서……간황 즉 중립지대의 형성은 모두 청국이 그 지방 인민을 몰아내고 수용한 결과로서, 그 지방을 방임한 것은 청국의 영토라고 칭할 수 없”⁴⁵⁾다고 하여, 청 태조·태종 때에 백두산과 두만강 일대의 여진 부락을 정복하고 부락민을 팔기와 각지의 수비병으로 수용한 결과 두만강 일대가 간황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간황지를 ‘중립지대’로 간주하여 청국의 통치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국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백두산 정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강희 정계 이후에 명의상의 경계는 두만강에 두었지만 실제로 간황지(間荒地)에는 청국인의 거주, 개간이 허락되지 않고 이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항의하여 휘철하는 예도 있음으로 간도 지방은 청국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⁴⁶⁾았다고 보아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에도 두만강 이북의 간황지, 즉 중립지대가 존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청조 발흥기에 간황지=중립지대가 형성되었음을 서술한 나이토는 간황지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로서 뒤 알드의 책에 수록된 지도를 들고 있다. 그는 병자호란에 패배한 조선이 청국에 항복하고 책봉을 받은 사실을 서술하고 나서

이때 반드시 있어야 할 감계획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청조의 서류에 하나의 증거도 없다. 그러나 프

43) 『目錄』, 『北興要選』 上.

44) 外部, 『韓淸議約公牘』(奎 15302), 38쪽.

45) 『間島問題調査書』 第二卷, 0319쪽.

46) 『間島問題調査書』 第三卷, 0346쪽(B03041213600).

랑스인 뒤 알드의 『Description de la Chine』 중에는 두만강 바깥에 녹둔도를 포괄하고 흑산산맥에서부터 보포산(寶髯山)에 이르고, 압록강 상류로 들어가는 두도구로부터 십이도구에 이르는 여러 물줄기와 송화강의 서쪽 큰 수원의 여러 물줄기와와 분수령인 장백산의 지맥으로부터 동가강(修家江) 본류의 약간 서쪽을 거쳐 크고 작은 고하(鼓河)의 수원으로부터 압록강과 봉황성의 중간에 이르는 선을 지도 상에 긋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봉황성의 동쪽에는 조선국의 서쪽의 분계표(分界標)가 있다. 대개 만주는 지나(支那)를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는데, 그때 장책(長柵)과 조선의 국경과의 사이에 무인의 지대를 둘 것을 의정(議定)하였다. 이 국경은 지도상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 하였다. 이 기술은 강희 48년(1709년)에 청 성조(聖祖)의 명을 받들어 청·한의 국경 실측에 종사했던 서양인 레지의 비망록으로부터 인용한 것으로,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조선의 북계로서 양국에 인정된 것은 모두 지금의 두만강·압록강 바깥의 땅에 있고 간황지대(間荒地帶)는 또 그 바깥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⁴⁷⁾



〈그림 2〉 당빌의 『조선왕국도』(오른쪽 지도는 압록강 유역을 확대한 것)

47) 『間島問題調査書』第二卷, 0314-0315쪽.

라고 뒤 알드의 『중국 서술』에 수록된 지도에 대한 자신의 설명과 더불어 레지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뒤 알드가 1735년 파리에서 편찬한 『중국 서술』은 18세기 유럽의 중국학을 대표하는 저서로서, 27명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낸 원고들을 바탕으로 편찬된 것이다.⁴⁸⁾ 이 책의 제4권에는 당시 ‘타타르(tartarie)’로 불리던 만주, 몽골, 조선, 시베리아, 티베트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레지의 조선에 대한 보고서 2편 - 「조선 왕조의 지리적 고찰」, 「조선의 간추린 역사」 - 과 더불어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ee)」가 수록되어 있다.

나이토가 묘사하고 있는 지도는 『중국 서술』 제4권에서 레지의 조선에 대한 보고서 앞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왕국도」인데, 이 지도는 레지가 만든 조선 지도를 바탕으로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제작자인 당 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이 제작한 것이다. 레지의 조선 지도는 『황여전람도』 제작 과정의 부산물로서, 1709~10년에 예수회 선교사 자르투(Pierre Jartoux), 프리델리(Erhermberg Xavier Fridelli) 등과 함께 했던 만주 및 조선과의 국경지역 측량을 기반으로 하고, 무커딩(穆克登)을 수행했던 수학자 허귀주(何國柱)의 봉황성-한성 경로 측량, 무커딩이 조선 정부로부터 받은 조선 지도 등을 참조하여 제작한 것이다.⁴⁹⁾ 「조선왕국도」에서 나이토가 설명하는 것은 유조변과 압록강 사이에 표시된 점선인데, 압록강 하구 왼편에서 시작하여 백두산 인근을 거쳐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점선의 궤적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쪽을 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왕국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나이토가 인용하고 있는 레지의 ‘비망록’은 『중국 서술』 제4권에 나오는 레지의 보고서인 「조선 왕조의 지리적 고찰」을 말한다. 나이토는 「조선 왕조의 지리적 고찰」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하였는데, 나이토가 발췌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곳(조·청 국경-필자)은 북위 40도 30분 20초이고 동경 7도 42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곳의 동쪽은 현재 왕조가 지배하는 한국의 서쪽 국경이다. 만주족은 한국 인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이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복속시켰고, 목적과 한국의 국경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남겨두는데 동의하였다. 그 국경은 지도에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다.”(밑줄 부분은 나이토가 보고서에서 인용한 부분임)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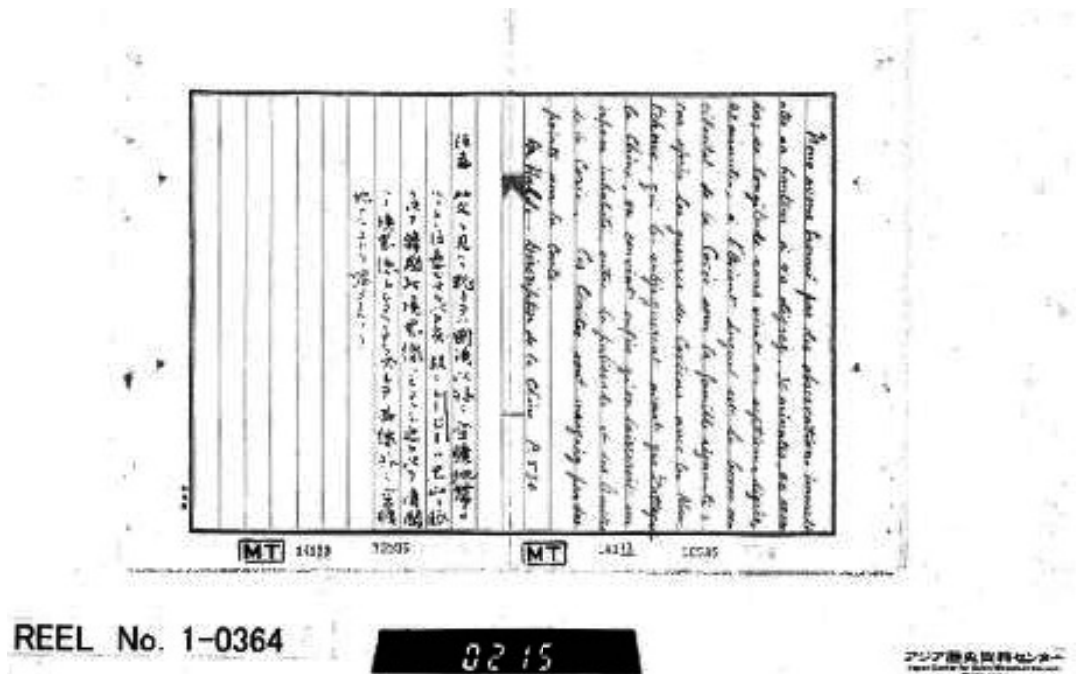
나이토가 레지의 서술에서 주목한 부분은 조선의 국경선으로 표시된 점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쪽에 있고 조선의 국경과 유조변(柳條邊)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레지의 보고

48) 정철웅, 「장-밥티스트 뒤 알드의 『서술』과 18세기 프랑스 중국학」, 『동양학』 64, 2016.

49) 쑹넨선,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너머북스, 2022, 244쪽.

50) Nous avons trouvé par des observations immédiates la hauteur à 40 degrés. 30. min. 20. sec.; la longitude nous vient au septième degré 42, minutes, à l'Orient duquel est la borne Occidentale de la Corée sous la famille régnante; car après les Guerres des Coréens avec les Mantcheous, qui les subjuguèrent, avant que d'attaquer la Chine, on convint enfin qu'on laisseroit un espace inhabité, entre la palissade & les limites de la Corée. Ces limites sont marquées par des points sur la Cart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volume 4, p.424

서에 나오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무인지대”로 번역하고, 이 영역을 ‘간황지대(間荒地帶)’ 또는 ‘공광지대(空曠地帶)’로 지칭하였다. 나이토가 더 나아간 지점은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중립지대’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는 두만강 이북의 빈 공간을 청국이 방임하였고 청국인의 거주, 개간을 금했기 때문에 청국의 영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공간을 청국의 지배도 조선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로 간주하였다.



〈그림 3〉 나이토 코난의 『중국 서술』 발췌 부분⁵¹⁾

간도파출소가 제기하는 ‘간광지대’는 나이토의 ‘간황지대’ 또는 ‘공광지대’에서 가져온 것이고, 레지의 「조선왕국도」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간광지대를 ‘중립지대’로 간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와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에서는 중립지대의 출현에 대한 나이토의 서술을 축약하고 「조선왕국도」의 조선 국경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간황지대’를 ‘간광지대’로 용어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간도파출소 보고서가 나이토의 보고서와 달라지는 유일한 곳은 간광지대의 출현을 정묘화약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간도 문제의 전말과 의견서」에서 정묘화약을 설명하면서

그 화약 중에는 양국이 각기 봉강(封疆)을 지킨다는 말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인민의 사사로운 월경을 금한다는 명약(明約)이 있는지 아닌지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천총(天聰) 2년 5월 조선 국왕의 조서에 “강역을 엄수하고 사사로운 월경을 금단한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내의(來意)는 지극히 옳다. 마땅

51) 「佛文淸韓境界圖附說」, 0215쪽.(B03041213000)

히 충분히 신명(申明)하여 거스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프랑스인 레지의 기록 중에 태조가 서남 원정을 기도할 때에 조선과 화약하고 간광지대를 협정하였다고 명기하였음을 본다면 그 지역이 명료하지는 않아도 당시 간광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⁵²⁾

라고 정묘화약 후 조선 국왕의 조서와 레지의 기록을 들어 정묘화약으로 간광지대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이트는 청 태종 때 두만강 이북에 간광지가 형성되는 상황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간도파출소의 보고서는 정묘화약시 체결한 협정으로 간광지대, 즉 중립지대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

당시 간도파출소의 총무과장으로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간도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었던 시노다 지사쿠는 나이트의 중립지대 개념에서 간도 문제에 개입할 근거를 찾았다. 그는 17세기 이래 간도 지역이 청국의 영토도 아니고 조선의 영토도 아닌 중립지대였다는 나이트의 주장에서 ‘무주지(無主地)’라는 국제법의 용어를 떠올렸고, 간도 문제의 역사를 중립지대 개념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았다. 통상 무주지로 번역되는 ‘terra nullius’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로, 국제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땅을 말한다. 19세기 국제법에 따르면 한 국가가 영토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선점, 정복, 할양 등이 있는데, 당시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① 무주지, ② 영유의 의사, ③ 실효적 지배를 들고 있다. 이때 무주지는 사람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문명국 또는 반문명국에 의하여 점유되지 않은 토지”여야 한다고 보았다.⁵³⁾ 이러한 무주지 선점이라는 논리는 유럽의 식민 세력이 원주민의 토지를 차지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와 타이완을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누족과 타이완 원주민을 축출하기 위하여 홋카이도와 타이완을 무주지로 규정한 적이 있었다.⁵⁴⁾ 이처럼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의 팽창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던 무주지 선점 논리는 시노다에 의해서 간도 지역에 적용되었다.

시노다는 간도파출소의 보고서에서 정묘화약으로 중립지대가 성립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중립지대 성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중립지대가 ‘무주지’라고 간주하였다. 간도파출소 당시의 글은 아니지만 1930년에 간도파출소 시절을 회고하는 글에서 시노다는

“병자·정묘의 양 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과의 사이에 간광지대를 설치하였다. 즉 천총의 화약시 조선의 서문(誓文) 중에 ‘각전봉강(各全封疆)’이라는 말이 있다. 그 봉강이라는 말이 아주 막연하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부터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한 것이 분명하고, 만주측도 이 양강의 북방 일대를 무인의 땅으로 하여 포기하고 자국에서도 또한 인민의 거주를 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지방이 무주·무인(無主無人)의 중립지대로 되었던 것이다……광서 초년에 이르러 청국도 이 간광지대의 개간을 착수하고 한국은 이미 그 수년 전부터 지방관이 지권(地券)을 발급하여 공공연하게 개간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중립의 성질을 잃어버렸다. 즉 양국 모두 이백 년

52) 『間島問題之顛末並意見書』, 0124쪽.

53) 박배근,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영토해양연구』 6, 2013.12, 44~45쪽.

54) 송넨선, 앞의 책, 240~241쪽.

이래 존중하여 왔던 중립지대를 이루는 의사를 포기한 것이다. 이로써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인 간도가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단지 무주의 토지로 남았던 것이다……통감부파출소 개설 당시 간도의 성질은 이미 중립성을 잃고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지 양국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존재하였던 것이다.”⁵⁵⁾

라고 중립지대의 성립을 무주지의 성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1880년대 이래 간도 지역의 개간이 시작되면서 무인지대, 중립지대로서의 성질을 잃었지만 여전히 무주지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간도파출소의 간도 지배를 영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로 만들고자 하였다.

나이토에서 시노다로 이어지는 ‘중립지대’라는 인식은 일본에서 러일전쟁 이전부터 만주에 관해 생산되던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1901년에 결성된 흑룡회는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하여 “시베리아 및 만주, 조선에서 제반 사물을 탐구, 해석”할 목적에서 만주와 시베리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 및 기관지 『흑룡(黑龍)』을 발간하였다.⁵⁶⁾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는 1904년 일본역사지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역사지리』에 게재한 글에서 간도 지역과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일대를 ‘중립지역’으로 지칭하였다.⁵⁷⁾ 그는 분계강인 해란하(海蘭河)와 두만강 사이의 영역을 ‘간도’라고 지칭하고 간도 명칭이 양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구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이처럼 ‘중립지대’라는 개념은 모리타의 ‘화외구역’ 개념과 더불어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던 만주에 대한 식민주의 담론에서 유래하였다.

V. 간도파출소의 철수와 ‘한인잡거구역’의 탄생

간도파출소 설치를 통하여 간도를 확보하려던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1908년 하반기 들어서였다.⁵⁹⁾ 일본 정부는 1908년 9월 만주문제 해결방침에 대한 각의 결정에서 “간도 문제는 한청 양국의 오랜 현안으로 본건에 관한 한국의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며, 강희 정제 이래 한·청 교섭의 역사와 청국이 한국에 앞서 해당 지역에 행정을 편 사실에 비추어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을 이루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도 문제와 ‘만주5안건’- 법고문(法庫門) 철도, 대석교(大石橋) 지선, 경봉철도 연장, 무순(撫順)·연대(煙台) 탄광, 안봉철도 연선의 광산-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일괄하여 청국 정부와 협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12월에 이주인 주청 일본공사가 청국측에 ‘만주6안건’을 통보하면서 일청

55) 篠田治策, 「間島問題の回顧」, 1930, 56~58쪽.

56) 황미주, 「『黑龍』의 한국 관련 기사를 통해 본 일본의 아시아주의 전개양상」, 『한국민족문화』 30, 2007.10, 135~137쪽.

57) 小藤文次郎, 「韓滿境界歴史」, 『歴史地理』 6-12, 1904, 1028, 1031쪽.

58) 『皇城新聞』, 1903.2.27. 別報.

59) ‘루트-다카하라’ 협정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간도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31, 2008, 216~222쪽 참고.

교섭이 새롭게 재개되었다. 일본측은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간도 한인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길회철도 부설권을 확보하여 간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한 반면, 청국측은 재판관할권 없는 영토권은 유명무실하다며 재판관할권 요구를 거부하였다.

간도 한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대립한 가운데, 일본측에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한인잡거구역(韓人雜居區域)’을 제시하였다. 1909년 2월의 제7차 회담에서 주청 일본공사는 청국측 대표에게 한인잡거구역과 통상지로 개방할 지점(영사관 및 분관 설치 지점)을 전달하였다. 당시 제시된 한인잡거구역은 “현재 한인이 밀집한 지역에 한정하고, 해당 지역을 동쪽은 애아하(艾呀河: 간도협약 한인잡거구역도의 ‘嘎呀河’)를 경계로 하고, 북쪽은 노야령에 접하고, 서는 노령(老嶺)에 접하여 정계비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령 이서(以西)의 서부 간도 전부 및 애아하 이동(以東)의 지역을 한인잡거구역에서 제거”⁶¹⁾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용정촌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국자가, 두도구, 백조평, 하천평(下泉坪), 동불사(銅佛寺) 5개소에 분관을 설치할 것과 각지에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청국 대표는 경찰서 설치에 재판관할권 이상으로 청국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반대하였고, “지도를 검열하니 동간도(東間島) 명칭이 있다. 우리들 종래 연길청의 경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일은 논하면 논할수록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니 실로 상담의 방법이 없다”⁶²⁾고 한인잡거구역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1909년 3월에 청국측이 간도 문제와 만주5안건을 헤이그 중재재판에 넘길 것을 제기함에 따라 중단되었던 간도 교섭은 8월에 안봉철도 개축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재개되었다. 일본측은 간도 문제와 만주5안건에 대한 일본측의 교섭안을 담은 각서를 청국측에 제출하였는데, 간도 문제와 관련하여 “청국의 고려하는 사정을 참작하고 타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인의 잡거구역을 현재 비교적 밀집한 지역만으로 축소”⁶³⁾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에 제시한 것과 동일한 한인잡거구역 및 6개소의 통상지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측은 무산 위쪽의 두만강 경계를 석을수(石乙水)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조 발상지인 장백산에 한 걸음이라도 가깝게 타국의 경계를 미치게 하는 것은 황실 및 국민의 감정이 용서하지 않을 것”⁶⁴⁾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길회철도를 조약의 조문으로 넣는 대신 두만강 상류는 석을수 경계로 정해졌으며, 일본측이 제시한 한인잡거구역은 청국의 이견 없이 수용되고, 통상지는 하천평과 동불사를 제외한 4개소로 확정되었다.⁶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도파출소가 설립하면서 제시한 간도의 범위는 “도문강(圖們江) 북쪽 지방의 잡거구역”(제4조)이라는 이름으로 간도협약에 남게 되었다. 간도파출소가 제시한 간도의 가정 경계와 한인잡거구역의 범위를 비교하면 ‘동간도 서부’ 전부와 노야령 지맥에서 알아하(嘎呀河)에 이르는 영역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두만강 상류도 석을수로 정해짐으로써 1887년 국경회담에서 청국측이 주장한 ‘석을수 경계론’이 관철되

60)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1978, 309~310쪽.

61) 『日本外交文書』 第42卷 第1冊, 「滿洲に關する日清協約締結一件」, 2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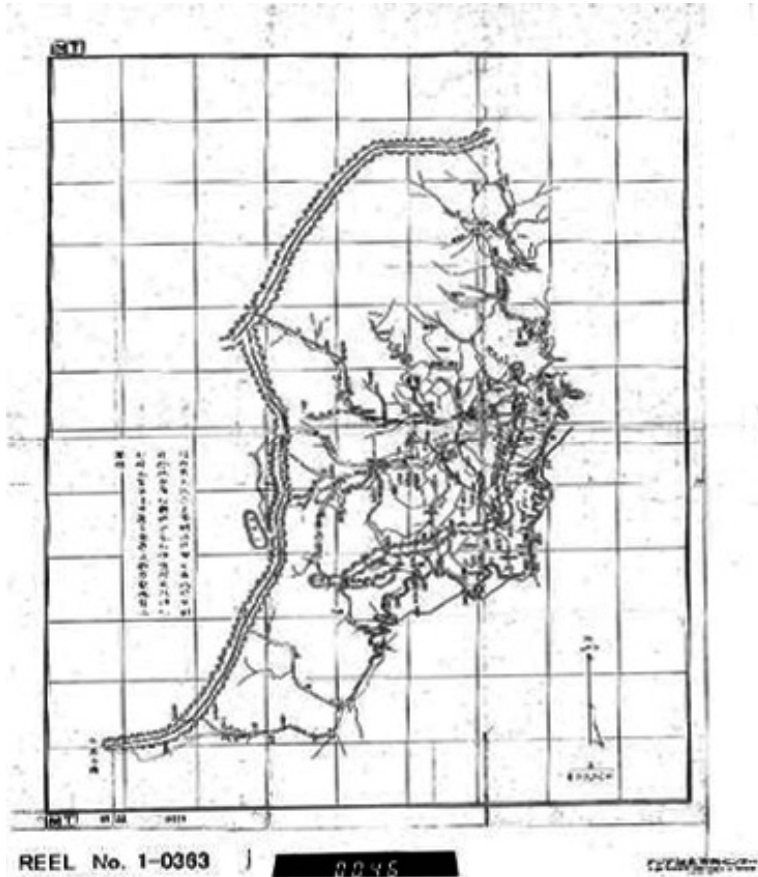
62) 위의 책, 242쪽.

63) 위의 책, 319쪽.

64) 위의 책, 333쪽.

65) 위의 책, 344, 351쪽.

었다. 간도 교섭에서 일본측이 동간도 서부를 포기한 것은 지형이 험하고 한인 이주자가 적어서 간도파출소가 관할하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한·청 양국의 경계가 ‘석을수-두만강’으로 확정됨에 따라 송화강의 상류 지류인 ‘토문강’ 동쪽의 영역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야령 지맥에서 알아하에 이르는 영역이 제외된 것은 훈춘과 인접해서 간도파출소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알아하 유역의 백초구를 통상지로 확보한 이상 청국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간도협약에 따른 한인잡거구역도⁶⁶⁾

일본 정부에서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상 간도파출소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08년 10월 헌병분견소의 증축을 둘러싸고 양국의 군경이 충돌한 ‘우적동(禹跡洞) 사건’⁶⁷⁾ 이후 간도파출소와 길림 변무공서의 대결이 격화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간도 교섭을 위하여 간도에서의 충돌을 자제시켰다. 청국측에

66) 『間島ノ版圖ニ關シ清韓兩國紛議一件』, 0045-0046쪽(B03041210700).

67) ‘우적동 사건’은 1908년 10월 회령간도의 禹跡洞에서 헌병분견소의 숙사 증축을 둘러싸고 길림변무공서의 순경과 간도파출소의 헌병이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청국측 순경 3명이 사망하여 양국 정부의 교섭 사건이 되었다.

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간도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간도파출소는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⁶⁸⁾ 간도파출소는 간도 교섭에서 배제되었고, 심지어 간도협약 체결 사실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직전인 1909년 8월 용정촌에서 교번소(交番所)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한 가운데, 사이토 소장이 길림변무공서에 “본관도 또한 단연코 이 지방을 한국 영토로 간주해 제반 시설을 행할 것”⁶⁹⁾이라고 통고하고, 통감부에 간도 출병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노다를 경성에 파견하였다. 경성에서 소네 통감을 만나 간도 출병에 대한 동의를 얻은 시노다는 바로 도쿄로 건너갔는데,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신문에서 간도협약 체결 기사를 보았고, 고무라 외무대신을 만나 간도협약 체결의 경과를 들을 수 있었다.⁷⁰⁾ 간도파출소는 11월 1일에 파출소를 폐쇄하고 3일에 모든 파출소원과 헌병은 두만강을 넘어 회령으로 철수하였으며, 2일 용정촌에 일본 총영사관이 세워졌다.

VI. 맺음말

기존의 연구가 간도 문제와 간도파출소의 관련성이나 간도파출소의 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도파출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간도 문제의 역사가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간도파출소의 간광지대 개념이 대한제국의 간도 담론과는 상이한 식민주의 담론에서 기원하였음을 규명하였다.

간도파출소는 간도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간도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간도파출소 설립 이후 간도 문제에 대한 현지 조사를 비롯하여 간도의 현황, 관습, 호구, 산업 등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간도 문제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의 역사는 ‘간광지대’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간도 문제의 기원이 되는 것은 17세기 초 정묘화약으로 출현하여 2백여 년 동안 유지된 ‘간광지대’이고, 19세기 후반 청국이 간광지대를 개방하면서 한·청 간에 경계문제가 대두되었다.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80년대에 열린 국경회담은 미결로 끝났으며, 러일 전쟁으로 중단된 경계 교섭은 간도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재개되었다고 보았다. 나이토에서 시노다로 이어지는 이러한 인식은 대한제국의 토문강 경계론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광지대를 청국의 지배도 조선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로 간주하였다. 간도를 중립지대, 나아가 무주지로 바라보는 간도파출소의 인식은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던 식민주의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간도파출소 설치를 통하여 간도를 확보하려던 일본 정부의 방침이 1908년 하반기 들어 바뀌면서 간도파출소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간도의 범위는 간도협약에서 두만강 이북의 ‘한인잡거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간도파출소는 1909년 11월에 철수함으로써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간도파출소

68)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204~225쪽.

69) 위의 책, 227쪽.

70) 『間島問題の回顧』, 46~51쪽.

의 간도 문제 인식은 간도파출소의 간행물이 재발간되고 시노다의 저술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널리 보급되었다. 해방 이후 간도 문제 인식이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에 기반하게 된 것은 대한제국의 간도 문제 인식이 규명되지 못한 채 간도파출소의 간도 문제 인식이 대한제국의 간도 문제를 계승한 것인 양 수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北輿要選』

外部, 『韓清議約公牘』(奎 15302).

內藤湖南, 『間島問題調査書』, 1907.4.

『間島視察報告書』, 1907.5.

統監府派出所, 『清韓國境問題沿革』, 1907.7.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間島問題之顛末並意見書』, 1908.4.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1909.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殘務整理所 編, 『間島産業調査書』, 1910.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編, 『間島在住韓人ノ親族慣習及其他』, 1917.

『日本外交文書』

김춘선,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박배근,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영토해양연구』 6, 2013.

우경섭, 「한말 두만강 지역의 유학자들 - 金魯奎와 金鼎奎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2, 2014.

정철웅, 「장-밥티스트 뒤 알드의 『서술』과 18세기 프랑스 중국학」, 『동양학』 64, 2016.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31, 2008.

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혜안, 2019.

쑹넨선(지), 이지영·이원준(역),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너머북스, 2022.

小藤文次郎, 「韓滿境界歴史」, 『歴史地理』 6: 12, 1904.

守田利遠 編, 『滿洲地誌』, 東京: 丸善株式會社, 1906.

篠田治策, 「間島問題の回顧」, 1930.

名和悦子, 『內藤湖南の國境領土論再考 - 20世紀初頭の清韓國境問題間島問題を通して -』, 汲古書院, 2012.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Japanese Perception on Gando Issues and the Colonization of Gando Issues by Gando Police Station

Bae, SungJoon*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f Gando produced in the Korean Empire is appropriated by colonial discourse through the survey report produced by Gando police station.

Gando police station conducted the field work and the documentary survey on Gando region before and after setting up the police station and submitted the survey report to Japanese Resident-General in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Seen from the survey report on Gando issues, the history of Gando issues was composed with as the central figure of the concept, 'in-between empty zone' (間曠地帶). The origin of Gando issues was the zone which was appeared by a treaty between Qing and Joseon in the early 17th century and was maintained for two hundred years. When Qing opened the zon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demarcation issue between Qing and Joseon was emerged. Those who worked for Gando police station thought that the border meeting held in 1885 and 1887 was closed undecided and Japan reopened the border meeting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perception on the zone which was connected from Naito Konan to Jisaku Sinoda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on 'Tumen boundary' in the Korean Empire. They thought the zone was a neutral zone which was not ruled by Qing nor Joseon. As well as the concept that Gando was a neutral zone, go even further, 'terra nullius' was originated from the colonial discourse which justified the imperial expansion by Europe and Japan.

As Japanese Gando policy was changed in the late 1908, the range of Gando decreased.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of trial jurisdiction between Qing and Japan, the range of Gando was reduced to the jurisdiction by Gando police station and 'Seokulsu (石乙水) boundary' by Qing was fixed. When Japanese government gave up the Gando ownership, Gando police station remained nominal and the range of Gando was changed into 'Korean mixed residence area' (韓人雜居區域).

[Keywords] Gando police station, Gando issues, Tumen river, in-between empty zone, Korean mixed residence area

* A former researcher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